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간이투자설명서

효력발생일 : 2015년 12월 1일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블랙록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블랙록 글로벌 자산배분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14989**)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02-751-0500)
4.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15. 09. 30.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 12. 01.**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www.blackrock.co.kr)
판매회사 본·지점(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조)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목차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운용전문인력
6. 투자실적 추이

제2부 매입 및 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제3부 요약 재무정보

1.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원본손실 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특히 자산총액의 50% 이상(최대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이며 투자신탁 재산을 전세계 회사 및 정부가 발행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함과 동시에, 전세계의 회사 및 정부가 발행한 채권 및 단기증권 등에도 투자하는 'BGF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BGF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관리회사	BlackRock (Luxembourg) S.A. (일일운용 업무 및 직접 또는 위임에 의하여 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리 등 모든 운용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LLC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엘씨)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관리회사인 블랙록 (룩셈부르크) 에스.에이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아 본 회사의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의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로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러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설정일 및 소재지	설정일: 1997년 1월 3일 BGF 설립국가: 룩셈부르크
	투자목적 및 전략	특별한 제한 없이 전세계 회사 및 정부가 발행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채권 및 단기증권(특히 투자자문회사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는 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 * 기타 소규모 회사 및 신흥회사의 주식에도 투자 가능 * 기타 투기등급 채권에도 투자 가능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투자위험	투자자는 해당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위험 및 특수위험에 노출되며,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의 [별첨 2-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지수	▪ (S&P 500 Composite Index × 36%) + (FTSE All-World (ex US) Index × 24%) + (Merrill Lynch US Current 5-Year Treasury Bond Index × 24%) + (Citigroup Non-USD World Government Bond Index × 16%)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해당 피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비교지수

$\{(\text{S\&P 500 Composite Index} \times 36\%) + (\text{FTSE All-World (ex US) Index} \times 24\%) + (\text{Merrill Lynch US Current 5-Year Treasury Bond Index} \times 24\%) + (\text{Citigroup Non-USD World Government Bond Index} \times 16\%) \} \times 90\% + [\text{Call} \times 10\%]$

다. 환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해지를 실시합니다. 목표환해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 및 금리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해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해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환해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해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증권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해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은 주로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해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환해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계약화를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해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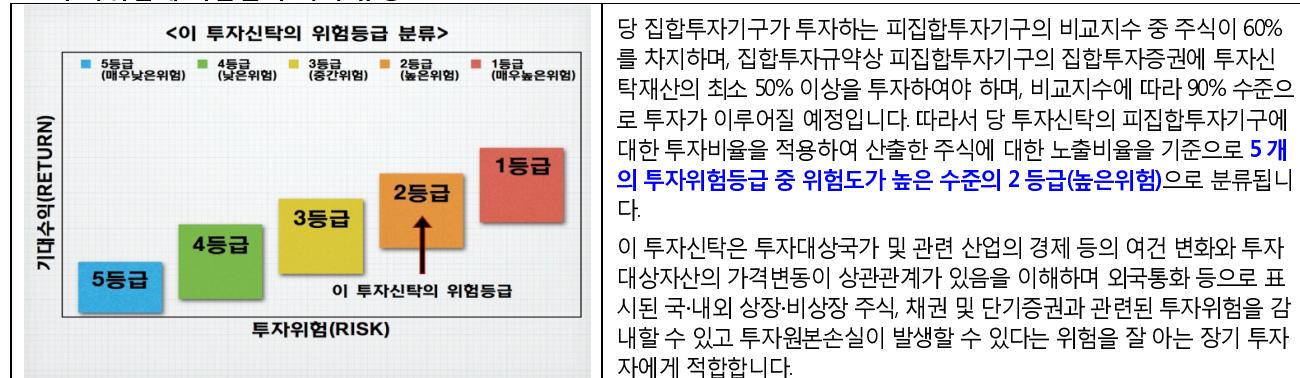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전세계 회사 및 정부가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채권 및 단기증권 등에도 투자)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주식 및 채권 등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의 회사 및 정부가 발행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채권 및 단기증권 등에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는 미국달러이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환해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해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해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해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해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이일드채권 (고수익 고위험 채권)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 등에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등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 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후강통을 통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후강통*을 통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 주식에 펀드 총 자산의 10%까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후강통: 후강통이란 중국과 홍콩간 주식 교차거래를 위해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HKEX"),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중국예탁결제원이 개발한 증권 거래 및 결제 연계 시스템을 말합니다. 후강통은 후구통과 강구통으로 이루어집니다. 후구통에서 홍콩과 해외 투자자들(후강통 펀드를 포함)은 각자의 홍콩 증개인들 및 홍콩 증권거래소가 설립한 증권거래 회사를 통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주문을 함으로써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적격 중국 A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강구통에서 중국 투자자들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p>특정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자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자로 후강통 거래가 개시되었습니다.</p> <p>후강통을 통한 중국 본토 투자와 관련하여 쿼터제한, 과세위험, 법적/실질적 소유권, 운영위험, 규제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추가로 수반됩니다. 후강통을 통한 중국 본토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별첨 2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중 후강통 투자 관련 특정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해지위험	<p>이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 ❖ 투자위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위험등급분류는 블랙록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5년 9월 30일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순자산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 자산규모	
조동혁	1963년	본부장	24 개	5,083 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 한국투자신탁뉴욕사무소장 - 리서치 5년/ 해외펀드운용 11년

주 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8월 24일 현재, 단위:%)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A)	-1.24	11.04	9.90	5.65	6.29
종류(C1)	-1.93	10.35	9.70	5.57	5.56
종류(C2)	-1.78	10.44			
종류(C3)	-1.64				
종류(C4)	-1.54	10.72	7.38		

종류(C-e)	-1.58	10.80	9.59	5.32	6.05
종류(C-w)	-0.50	11.85			
종류(S)	-0.74				
종류(A-e)	-0.75				
비교지수	-3.15	11.60	7.75	8.86	8.14

주 1) 비교지수: $[(S&P 500 Composite Index \times 36\%) + (FTSE All-World (ex US) Index \times 24\%) + (Merrill Lynch US Current 5-Year Treasury Bond Index \times 24\%) + (Citigroup Non-USD World Government Bond Index \times 16\%)] \times 90\% + [Call \times 10\%]$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 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 2 부 매입 및 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부담비율(연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주1)	없음	없음	없음
종류 A-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여,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주1)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2	종류C1 수익증권 보유 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3	종류C2 수익증권 보유 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4	종류C3 수익증권 보유 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 억 이상 개인 또는 500 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및 변액보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주2)	없음	없음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 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구분	부담비율(연간)(순자산총액의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주 1)	총보수·비용(주 2)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의 총보수·비용 (0.45%) 포함) (주 3)	증권거래비용(주 4)
종류 A	0.5500	0.7500	0.0500	0.0250	0.0000	1.3750	1.8250	0.0000
종류 A-e	0.5500	0.2500	0.0500	0.0250	0.0000	0.8750	1.3250	0.0000
종류 C1	0.5500	1.4500	0.0500	0.0250	0.0000	2.0750	2.5250	0.0000
종류 C2	0.5500	1.3000	0.0500	0.0250	0.0000	1.9250	2.3750	0.0000
종류 C3	0.5500	1.1700	0.0500	0.0250	0.0000	1.7950	2.2450	0.0000
종류 C4	0.5500	1.0500	0.0500	0.0250	0.0000	1.6750	2.1250	0.0000
종류 C-e	0.5500	1.1000	0.0500	0.0250	0.0000	1.7250	2.1750	0.0000
종류 C-w	0.5500	0.0200	0.0500	0.0250	0.0000	0.6450	1.0950	0.0000
종류 I	0.5500	0.4000	0.0500	0.0250	0.0000	1.0250	1.4750	0.0000
종류 C-p	0.5500	0.6000	0.0500	0.0250	0.0000	1.2250	1.6750	0.0000
종류 S	0.5500	0.2500	0.0500	0.0250	0.0000	0.8750	1.3250	0.0000
종류 S-p	0.5500	0.1800	0.0500	0.0250	0.0000	0.8050	1.2550	0.0000
종류 S-i	0.5500	0.0120	0.0500	0.0250	0.0000	0.6370	1.0870	0.0000
종류 C-Rp	0.5500	0.5000	0.0500	0.0250	0.0000	1.1250	1.5750	0.0000
부담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14.08.25.-2015.08.24.]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2015.08.24)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I, S-i, C-Rp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C1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BGF 글로벌자산배분 펀드)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 0.45%(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는 연 0.45%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14.08.25.-2015.08.24.]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2015.08.24)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I, S-i, C-Rp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C1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 원)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단 3년 미만 환매시 발생하는 후취판매수

투자기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종류 A 수익증권 [선취수수료(1.0%로 가정) 포함]	282	674	1,107	2,394
종류 A-e 수익증권 [선취수수료(0.5%로 가정) 포함]	182	467	782	1,716
종류 C1, C2, C3, C4 수익증권	253	749	1,254	2,752
종류 C-e 수익증권	218	686	1,202	2,736
종류 C-w 수익증권	110	345	605	1,377
종류 I 수익증권	148	465	815	1,855
종류 C-p 수익증권	168	528	926	2,107
종류 S 수익증권	133	418	732	1,667
종류 S-p 수익증권	126	396	901	1,579
종류 S-i 수익증권	109	343	601	1,367
종류 C-Rp 수익증권	158	497	870	1,981

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1, C2, C3, C4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과세

가. 과세에 관한 사항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수익자	원천징수 원칙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일반법인 15.4%(법인지방소득세 포함)	이익을 지급 받는 날

주 1) 과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종류 C-p 및 S-p)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단,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통상적인 경우)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3.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매입	환매
①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4. 전환절차 및 방법 (이연판매보수 적용에 따른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1)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2)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3)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집합투자규약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1)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3 부 요약재무정보

1. 요약재무제표

요약재무정보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150824	20140824	20130824
I .운용자산			
증권	137,994,726,514	284,563,555,268	56,040,543,710
현금 및 예치금	127,735,042,172	274,002,661,039	52,509,861,723
II. 기타자산	10,259,684,342	10,560,894,229	3,530,681,987
자산총계	4,900,947,587	8,905,398,032	2,306,639,793
II. 기타부채	142,895,674,101	293,468,953,300	58,347,183,503
부채총계	13,693,536,968	8,665,155,793	2,809,346,869
I. 원본	131,064,337,823	256,830,402,307	50,576,354,977
II. 수익조정금	-1,154,464,773	11,226,172,112	3,894,411,067
III. 이익잉여금	-707,735,917	16,747,223,088	1,067,070,590
자본총계	129,202,137,133	284,803,797,507	55,537,836,634
I . 운용수익	2,376,631,709	19,732,891,029	1,370,129,755
이자수익	102,496,510	146,737,244	21,779,891
매매/평가차익(손)	214,103,277	17,546,655,048	1,138,587,452
기타이익	2,060,031,922	2,039,498,737	209,762,412
II. 운용비용	3,084,367,626	2,985,524,461	303,059,165
관련회사보수	3,054,743,430	2,957,435,756	296,960,869
기타비용	29,624,196	28,088,705	6,098,296
III. 당기 순이익	-707,735,917	16,747,366,568	1,067,070,590
* 매매회전율 ^(주 1)	0	0	0
* 매매수수료	0	0	3,127,800

주 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 (연기준)로 합니다.

주 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